

##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9. 6.12.(수) 09:33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호성 위 원 장  
김석진 부위원장  
표철수 상임위원  
허 욱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고삼석 상임위원 (1인)

### 5. 회의내용

#### ① 성원보고

#### ② 국기에 대한 경례

#### ③ 개회선언

#### 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2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#### ⑤ 서면회의 결과보고

- 제27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- 제27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#### 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**7] 의결사항**

**가. CallApp Software Ltd.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9-28-116)**

- o ‘CallApp Software Ltd.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’에 대해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CallApp Software Ltd.가 배포한 ‘CallApp 발신자 정보·차단 앱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조사(17.7.28.~19.1.25.) 결과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등 법 위반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90만원의 과징금과 1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<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>

피심인	위 반 내 용	시정 명령	과징금 (단위:만원)	과태료 (단위:만원)
CallApp Software Ltd.	• 개인정보 수집 동의 위반(제22조) -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음	○	90	-
	• 이용자의 권리 등(제30조제6항) - 개인정보의 동의를 철회 또는 열람·제공·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시보다 어렵게 함	○	-	1,000

**나.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9-28-117~118)**

- o ‘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’에 대해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- 현대자동차(주), 기아자동차(주) 2개사의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 수집 등에 대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취급·운영 실태조사(18.10.23.~19.1.3.) 결과,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제30조 및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19조, 제24조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2개사에 대하여, △과징금 2,380만원, △과태료 2,840만원, △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, △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<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>

사업자명	위 반 내 용	관련 규정	시정조치
현대 자동차	•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- ‘길안내’, ‘차량위치 공유’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나,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·서면·모사전송·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	정보통신망법 §25②  시행령 §10	시정명령  과징금 2,190만원

사업자명	위 반 내 용	관련 규정	시정조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이용자의 권리</b></li> <li>-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운행정보를 정기점검 리포트 또는 월간 리포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할 뿐, 이에 대한 삭제를 스마트폰 앱 또는 웹사이트 등에서 할 수 없고 블루링크 고객센터에 전화 (1899-0606) 또는 이메일(tmsmaster@hyundai.com)로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탈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제공하지 않음</li> </ul>	정보통신망법 §30⑥	과태료 1,420만 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개인위치정보의 수집</b></li> <li>- UVO(유보) 서비스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에게 위치정보사업자 구분 및 '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'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용약관을 동의받음</li> </ul>	위치정보법 §18① 시행령 §22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</b></li> <li>-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"요청"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,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,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한 경우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</li> </ul>	위치정보법 §24②	
기아 자동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개인정보의 처리위탁</b></li> <li>- 이용자에게 'UVO(유보)'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자동차(주)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고 있으나,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·서면·모사전송·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</li> </ul>	정보통신망법 §25② 시행령 §10	시정명령 과징금 190만원 과태료 1,420만 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이용자의 권리</b></li> <li>-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운행정보를 정기점검 리포트 또는 월간 리포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할 뿐, 이에 대한 삭제를 스마트폰 앱 또는 웹사이트 등에서 할 수 없고 'UVO(유보)' 고객센터에 전화 (1899-2121) 또는 이메일(tmsmaster@kia.com)로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탈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제공하지 않음</li> </ul>	정보통신망법 §30⑥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</b></li> <li>- 이용자에게 위치정보사업자 구분 및 '위치정보 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*'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불명확하게 명시한 요약된 이용약관으로 동의받음</li> </ul>	위치정보법 §19① 시행령 §23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</b></li> <li>- 네비게이션에 교통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"요청"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,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,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한 경우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</li> </ul>	위치정보법 §24②	

## 8] 보고사항

### 가.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고시)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‘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고시)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김기석 재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 -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고시)」 일부개정안\*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
- ※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기재부·법제처·규개위 심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

#### \*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- 분담금 산정 시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하여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,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%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
-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같게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개선
-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,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·중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기본징수율을 감경
- 분담금 산정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, 3년마다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

### 나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‘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 -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\*을 원안대로 접수함
- ※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

#### \*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-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협찬을 받아 제작·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이나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광고와 명확히 구분
-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를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함

-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그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함

## 9. 기 타

### 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6월 19일(수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## 6. 폐 회 (11:34)